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1명을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지반·지열발전·재해·재난관리·안전관리·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포항 지진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진상조사위원회 의사의 공개) 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법 또는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문가
5.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1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1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포항 지진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피해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

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 의사의 공개)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사항이나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18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3. 포항지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

적인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②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국가 등은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9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① 법 제2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2.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포항시가 수행하는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 방재교육공원 조성

4.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심의위원회가 재난 예방 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시행여부는 포항시의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③ 포항시는 제2항의 사업 신청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국의 조직과 구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사무국의 명칭을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38조 제1항제1호	1,500	2,000	3,000

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1,500	2,000	3,000
다.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1호	500	700	1,0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3호	500	700	1,000